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2016년 9월 6일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23일,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24일 원안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2016.9.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 가. 상정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중
불합리한 경쟁 제한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비영리법인
으로 한정해오던 내용을 개정(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개정 취지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외부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하여 의뢰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임.

□ 주요 검토 내용

- 우리 구는 2010년 7월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를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및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종로조합>과 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사실조사를 의뢰해 오고 있음.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종로조합 일반현황>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 1가 29-7

- 설 립 : 2001년 03월 01일
 - 조합장 : 김준우 (51.08.10.)
 - 직 원 : 박성대 (55.09.15.)
 - 회원수 : 844명(담배소매인 업소현황), 종로 · 중구 · 용산(2,550명)
 - 회 비 : 매월 3,000원, KT&G 매입량의 1/1,000 추가 지불
- ※ 조합은 의무 가입사항으로, 최초가입비는 10만원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및 사실조사 의뢰실적>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청건수	58	102	112	107	101	148	51
사실조사 의뢰	58	120	112	107	101	148	51
부적합건수	27	18	23	28	7	23	4

※ 부적합 사유 : 거리제한, 점포 미개설, 불가한 장소, 위법건축물 등

○ 안 제2조제2호와 관련하여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서 구청장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 의뢰 대상기관을 기존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2010년 3월에 “관련 기관 및 단체”로 법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을 폭넓게 확대하였음.

이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적합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실조사를 할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여전히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단체 또는 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여 사실상 특정 단체를 지정하고 있어, 여타의 기관 및 단체는 진입조차 할수 없으며 경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특별시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토록 협의하여 각 지자체에 권고함에 따라, 2015년 상반기부터 관악, 서초, 성북, 영등포, 구로, 금천, 서대문, 강동, 양천구 등에서도 이미 개정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구도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

인”을 “담배와 관련된 법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다만, 인력과 경험, 전문성을 갖췄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다면, 집행부(안)에서와 같이 “담배와 관련된 법인”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수 정 의 견>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u>비영리법인</u> 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u>수행할</u>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u>법인</u> 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u>수행할</u>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 ----- -- <u>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u>

관 계 법 령

□ 담배사업법

[시행 2015.7.22.] [법률 제12269호, 2014.1.2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5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2.] [기획재정부령 제453호, 2014.12.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5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삭제 <2014.1.29.>

2. 삭제 <2014.1.29.>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

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1.29.>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 2014.1.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⑦ 제4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3.3., 2014.1.29.>

⑧ 제7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2014.1.29.>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3.3., 2014.1.29.>

⑩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3., 2014.1.29.>

⑪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2014.1.29.>

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전문개정 2009.7.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 윤종복 위원 의 수정동의안

6. 수정안의 요지 : “별첨”

7.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

별첨

수정 동의안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u>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u> 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u>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u>	2.“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u>법인</u> 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u>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u> 를 말한다.	2.----- ----- ----- <u>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u>